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백 영 철	서 명	
제 목	빈집 철거대책	담당실과	시 장

최근 몇년사이에 우리시는 각종 지선도로의 개설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이어지면서 여러곳에 빈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빈집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2조에 따르면 시에서는 매년 빈집의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안에 위치하여 있는 빈집이 공약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집 소유자 대부분이 외지에 살고 있어 철거동의를 받는 것과 시에서 철거할시 가득이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알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도 빈집철거 폐기물 수수료 및 장비임차료로 4,750천원만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빈집 철거 문제는 유독 우리시만 문제로서 대두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빈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자진철거할 경우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현재까지 각동별 빈집 발생동수· 발생유형· 발생연도 등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둘째,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다면 연차별 정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와

셋째, 다른 자치단체 처럼 자진철거할 경우 일부비용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조 경 식	서 명	
제 목	지적정리 불합리	담당실과	시 장

대포동 1통지역(내물치)은 지난 '79년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으로 시에서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거래는 지주와 주민들이 구성한 추진위원회에서 말아 70여평을 균할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분할한 부지속에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있는 재정경제부 부지와 구 거로 되어있는 건설교통부 부지를 용도폐지후 분 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선행치 않고 분할·분양됨으로써 현재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증축하 고자 하여도 위와같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 고 있고, 마을안길 또한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당시 시가 새마을사업의 일환 으로 계획한 사업인 만큼 민원해결차원에서 지금 이라도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조 경 식	서 명	
제 목	설악눈꽃제 활성화	담당실과	시 장

우리시는 겨울철의 유일한 축제로 지난 '96년부터 설악의 눈을 매개체로 한 축제를 기획하여 그 동안 이를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일부 눈꽃축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이 일본 삿포르 등 선진 눈꽃축제 견학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눈꽃축제는 벌써 7회째의 행사를 치루어지만 인근 자치단체인 태백시의 눈꽃축제나 인제군의 빙어축제에 비하여 연륜이 더함에도 불구하고 규모나 전구적인 인지도면에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계절적인 영향으로 축제기간동안 눈이 오지 않아 인공적으로 눈을 만들고 행사 주개최지를 설악산국립공원내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은 인정되나, 금년과 같이 눈꽃축제를 치를 경우 머지않아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축제기간동안 치루어진 각종 행사의 참가인원과 예산집행액

둘째, 당초 계획한 행사가 취소된 사유와 사후처리

셋째, 향후 설악눈꽃축제를 계속 개최할 것인지 여부와
만약 계속 개최한다면 주개최지, 방법 등을 개선할 용의
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답변서

자료번호	소 관	관광과	질문의원	조경식
제 목	설악눈꽃축제 활성화			
《 질문요지 》 1. 금년 축제기간 동안 치루어진 각 행사의 참가인원과 예산집행액은? 2. 당초 계획한 행사가 최소된 사유와 사후처리는 ? 3. 향후 설악눈꽃축제를 계속 개최할 것인지 여부와 만약 계속 한다면 주개최지, 방법 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				
《 답변내용 》 ○ 눈꽃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가장중요한 관건과 축제의 성공 여부는 강설량과 강설시기에대한 적기 판단이라 할수 있으나 ○ 강설량과 강설시기가 매년 일정치 않을 뿐만아니라 제설장비도 확보되지 못하고 인공적으로 눈을 만드는 기상조건도 좋지않는등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너무도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 눈을만들어 연례적으로 해오던 형태의 축제로서는 • 매년해오던 형태이상으로는 더 발전할 수 없고 • 막대한 경비가 투자되고 육상자위대가 동원되는 다른국가의 축제와 차별화및 경쟁력을 갖을 수 없다는 판단과				

- 매년 해오던 형태의 축제를 더이상 계속 한다는 것은 시간과 경비낭비등 소모적일수밖에 없으므로 제7회 눈축제 부터는 지역에서만 할수 있고 경쟁력을 갖을수 있는 행사로 비록 금년에 100명만 왔더라도 내년에 1명이라도 더올수 있는 행사로 착실하게 발전 시켜나가야 겠다는 설악눈꽃축제 위원회의 결정으로
- 연례적인 행사개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제7회 설악눈꽃축제를
 - 1. 26부터 1.27까지 종합경기장에서 해오던 장소를 설악동과 설악산으로 옮겨
 - 강설량과 강설시기에 관계없이 우리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행사로
 - 세계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토왕성폭포 빙벽대회와
 - 대청봉을 넘는 설악산최고봉 등반대회
 - 일반인들이 설악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하얀산길걷기
 - 그리고 설악동 주민이 참가하는 눈·얼음조각거리조성 행사를 개최키로 하였음

○ 지역전체 주민, 업체, 기관, 단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주민과 업체 그리고 타지역 학생들이 설상설치 인력으로 고용되어 설상을 만드는등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함.

○ 제7회 설악눈꽃축제는

- 협찬사의 지원액 50,000천원중 48,589천원과

- 시비로

 - 눈조각거리조성 보조금 10,000천원

 - 사전홍보비 5,637천원이 지출되었음

○ 향후 설악눈꽃축제의 발전은 설악눈꽃축제를 설악산일대에서 개최함에 있어 가장중요한 것은 지역의 전체 주민, 업체, 기관단체의 참여와 설악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 관광객이 적게 올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 보다 많은 관광객이 와야하고 그러한 수용형태를 갖는 마인드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며

○ 설악눈꽃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설악눈꽃축제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市 政 質 問 答 辯 書

자료번호

소 관

건 설 과

질문의원

조 경 식

□ 질문요지

- '79년 새마을 주택개량사업으로 대포동 1통지역으로 이주하여 70여평을 분할 분양을 받았으나 공부상 도로로 되어있는 재정경제부 부지와, 구거로 되어있는 건설교통부 부지를 용도폐지후 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 그당시 이를 선행치 않고 분할·분양됨으로써 사유재산 관리 및 권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결방안 강구 요구

□ 답변내용

- 건설과장 김용원입니다
- 조경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포동 1통(내물치) 지역 이주자 택지지구내, 재정경제부 소관 도로부지와 건설교통부 소관 구거의 용도폐지후 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포동 1통(내물치 마을)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신바와 같이, '79년 설악산 입구의 현 공원부지내에 있던 마을을 새마을사업 일환인 취락개선 사업으로 마을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 마을 부지 전체를 구입하고, 개인에게 일정 면적으로 분양하여 현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 현 마을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소유 도로는 5필지 129㎡(약 39평) 모두 분할·용도폐지후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3필지(239-3, 239-4, 239-6) 78㎡는 우리시와 대부계약 체결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 2필지(239-2, 239-5) 51㎡는 개인이 대부계약없이 사용하고 있어 현지확인후 변상금 및 대부 계약을 실시하고 불하요구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 건설교통부 소유의 구거는 총연장 130m(폭 1~4m), 면적은 301㎡(약 91평)로, 현지 조사결과 구거부지는 구거의 형태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개인 주택들의 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구거부지는 빠른시일내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하겠으며, 용도폐지 이후는 국유재산 소관청이 현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된 이후 불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 관	도시과	질문의원	백영철
[질문요지] ○ 빈집 발생동수 · 발생유형 · 발생년도 등의 현황 ○ 빈집의 년차별 정비계획 ○ 자진철거할 경우 일부비용의 지원계획				
[답변내용] ○ 빈집 발생현황 및 년차별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백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빈집이라 함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령상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뜻하는 것으로 시가지내 빈집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 등이 정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는 농어촌지역보다 시가지내 빈집으로 인한 주변민원과 청소년들의 우범장소,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우리시 전체에 대한 빈집실태를 조사한바 - 총 38동으로 이중 농어촌지역이 9개동, 시가지내 29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조사된 빈집에 대하여는 2002. 5. 1 ~ 5. 15까지 소유자 에게 자진철거 및 보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시가 철거함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정구한 후 2002. 5. 30까지 장비임차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 정비대상 대다수 빈집이 철거불응 또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분리된 이해관계로 실제 철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로 빈집정비에 효율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 또한, 빈집정비를 위해 2002년 당초예산에 폐기물 수수료 350만원, 장비임차료 125만원. 총 475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유자 자진철거에 따른 지원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며 시가지내 빈집을 자진 철거한다 하여 보조금 등의 행정지원이 있을 경우 당연히 자진 정비하여야 할 대상자가 오히려 정비하지 아니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요인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수집, 검토한 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백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빈집정비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김 종 수	서 명	
제 목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	담당실과	시 장

우리지역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중앙시장은 시 승격 이전에 개설되어 지역의 애환과 정서가 담겨 있고 지역경제의 생명줄로서 자리잡아 왔으나,

최근들어 조양동 일부지역에 외지업체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마트·전자제품 판매상가 등 기존의 중앙상가와 유사한 업종으로 대형화 함으로써 소규모화된 중앙시장의 상권을 점차 잠식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시장은 '90년에 현대식건물로 지하1층·지상 3층·연건평 4,674평에 500여개의 점포가 입주하여 수산물뿐만 아니라 의류·잡화 등 각종 생활용품 판매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어물을 판매하는 난전과 소규모 점포들이 산재하여 있으나, 건물의 노후와 주차문제 및 대형마트와의 가격 경쟁력 상실로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 현실속에서 시 차원의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한 금액과 금년도 투자계획은

둘째,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쉽게 찾아올수 있는 이정표가 단순히 교통안내표지판밖에 없는데 별도로 대형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셋째, 중앙가로 양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차장으로 대체하여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중앙시장 유료주차장을 무료 주차장화 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인근에 주차장을 더 확장하여 편안한 쇼핑을 유도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서

질문의원	고 학 재	서 명	
제 목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담당실과	시 장

우리시는 최근들어 대북사업 및 북방향로의 길이 열리고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인구의 유입요인이 증가되었고, 지역 곳곳의 대형아파트의 잇따른 건축에도 불구하고 수복로 등 지선도로의 개설과 청호동 지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금년초에는 서민들이 전셋집 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영랑·중앙·금호·새마을 등의 주택밀집지역과 '70~80년대에 건축된 일부 아파트는 노후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79년에 제일 먼저 건축된 주공1차아파트는 20년이 지나 안전마저 위협받는 현실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공1차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 인근 아파트와의 조망권 등 어떠한 제한을 받는지

둘째, 주공1차아파트에서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은

셋째,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할 경우 시에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넷째, 앞으로 우리시의 경우 속초항만 건설·대포항 등이 개발되고 대북사업 및 북방교역의 전초기지로 확고히 자리잡을 경우 더욱 많은 수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주택지조성 등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자료번호		소 관	경제산업과 교통행정과	질문의원	김종수
------	--	-----	----------------	------	-----

< 건 명 >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

○ 속초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한 금액과 금년도 투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 시에서 투자한 것은 93년도에 지하상가 출입문 개선비 60,000천원을 투자한 이래 별다른 투자가 없었으나 2001년부터 추진된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의하여 순수 시비로 2001년에 시설보수공사 3건에 11,300천원, 중앙시장 유도간판 4개소 설치에 3,200천원, 구 중앙동사무소 임시주차장 조성에 57,000천원, 화재보험료 가입비 지원에 6,680천원으로 총 78백여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중앙시장은 정부의 재래시장활성화 투자대상 시장으로 책정되어 2004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었는바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865백만원, 자부담 265백만원 등 총사업비 1,730백만원으로 화장실 개수등 12건의 기반시설확충사업과 275대의 차량을 동시 주차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조성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중앙시장은 근본적으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현대식 대형마트에 비하여 특성화 되어있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 기반시설 조성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쇼핑물 등 층별 상품의 특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이정표가 단순히 교통안내표지판밖에 없는데 별도로 대형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 진입로인 국민은행 앞과 공설운동장 앞에는 이미 대형 이정표가 양쪽으로 잘 설치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는 중앙시장번영회의 건의로 한화콘도 4거리등 시내진입로 4개소에 유도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대형표지판 추가설치 문제는 중앙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중앙가로 양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차장으로 대체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차의 개념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고 5분 이내에 주차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는 쇼핑하려는 차량들이 대부분 30분 이상 초과하고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및 정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되므로 정차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 네 번째 질문하신

중앙시장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화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주차장을 더 확장하여 편안한 쇼핑을 유도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은 당초 차량을 양쪽교행으로 시행하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91년도에 일방통행시행, 노상주차장설치 후 장기주차 및 중복주차 등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과 민원이 끊임없이 92년도에 유료화를 시행하였고

이후에도 한쪽 주차방식으로 시행하다가 반대편의 불법 주차차량으로 예년의 형태로 불편이 야기되어 다시 양면주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중앙가로변 상가주들이 "주차장 유료화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된다"고 무료화를 요구하는 진정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제출로 강원도로부터 대행감사를 받아 이를 토대로 현재의 양면주차와 중복주차시 뒤편의 차량이 진행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인도를 축소, 도로를 넓혀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시장 주차장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의 시행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 정착되었다고 사료되며 또다시 무료화시 장기주차 및 중복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은 물론 오히려 시장활성화에 역행될것으로 생각되며 근본적인 대책으로 첫번째 답변드린바와 같이 금년부터 중앙시장 인근에 주차장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래시장(중앙시장)활성화 연도별 추진 계획

□ 2002년

○ 중앙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 882백만원

(국비 265, 도비 100, 시비 865, 자부담 265)

- 화장실 현대화 사업외 12개 사업 : 별첨

○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 848백만원

(국비 235, 시비 613)

- 위치 : 속초시 금호동 488-377번지와 4필지
- 면적 : 5,500㎡ (1,660평)
- 주차능력 : 동시주차 275대 (2,000대/일)
- 편입토지 및 물건
 - 토지 : 5필지 5,500㎡
 - 지장물 : 건물 51동
- 추진일정
 - 도시계획 시설결정 : 2002년 7월
 - 조사측량 및 설계 : 2002년 10월
 - 용지 및 지장물 보상 : 2002년 ~ 2004년

□ 2003년 ~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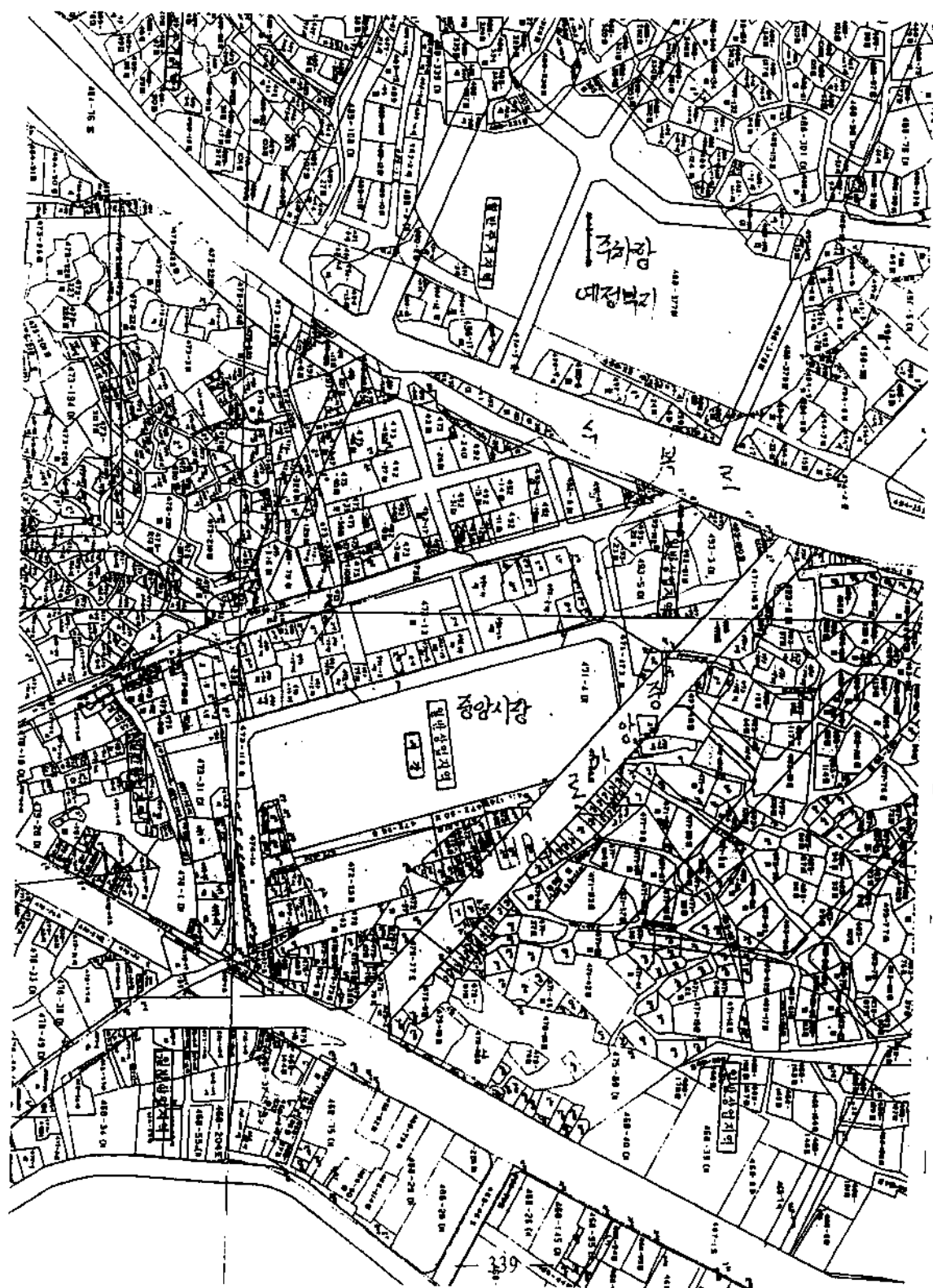
○ 대형주차장 조성사업 : 4,185백만원

(국비 1,255, 지방비 1,674, 자부담 1,256)

- 용지 및 지장물 보상
- 주차장 시설공사

□ 중앙시장 기반시설 확충 세부사업내역(2002년)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역
계	882	
○ 화장실 현대화	149	노후화로 누수 및 악취 심각(52m ² ×4개소)
○ 2층 냉방시설	120	쾌적한 상가 공간조성 (9,288m ²)
○ 아케이드 설치	130	계단 및 건물 부착 설치로 건물 외벽부분 파라솔 제거, 햇빛 차단 및 비가림
○ 지하시설 개선	187	○ 지하주차장 정비 ○ 지하 공기청정시설 교체 ○ 소방시설 및 하수구 정화시설 교체 ○ 지하 수산물시장 하수구 노후화 및 부식으로 배수불량 및 악취
○ 출입문 설치	23	침수방지 및 상가 내부 냉·온방시설 가동에 따른 적정온도 유지(18개소)
○ 공동창고 시설	50	상가 공동물품 보관창고 시설(50평)
○ 휴식공간 시설	23	상가 2층 계단 옆 공간내 소비자 및 상인 휴식공간 시설
○ 조명등 설치	140	건물외곽(200m) 투광등 설치 및 매장 내부 (13,195m ²) 고효율 삼파장 램프
○ 지하주차장 집수정 설치	10	중앙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하주차장 바닥 배부름현상 방지를 위한 집수정 설치
○ 상가내부 균열 보수공사	50	1층 슬래브 균열 보수공사



市政質問 答辯書

자료번호	소 관	도시과	질문의원	고학재
[질문요지] ○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시 인근아파트와의 조망권 제한여부 ○ 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향후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를 대비한 주택지 조성계획				
[답변내용] ○ 속초시 교동 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및 주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고학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공1차 아파트는 건립된지 22년이 경과된 우리시 최초의 아파트로서 구조내력 저하가 우려되고 설비 등이 노후되는 등 주변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균형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주공1차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설립이 2001. 9. 7 인가되었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수는 전체대상자 322명중 85%인 274명이며 - 대지면적은 23,776㎡ (7,200평) - 조합 자체적인 주택건설계획은 8~20층, 11개 동에 599세대입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시공사 선정을 위해 많은 건설업체와 다각적인 접촉을 가졌으나 국내 건설경기의 위축과 우리시의 높은 주택 보급율, 재건축아파트 분양예정가격과 실제 주택거래가격 차이등 경제성 및 시장성 저조로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조합이 지속적으로 건설업체를 물색 중에 있어 시공사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재건축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시 인근 아파트와의 조망권 등에 대하여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이로 인해 주공1차 재건축 조합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의 수익성을 찾고자 할 것으로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기존 인근 주택의 조망권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됩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주택건설계획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 할 것이나 재건축사업은 당해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하여 우리시 자체적인 규제완화 또는 세제지원은 현행 법률상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지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향후 휴양 및 관광·교역의 핵심 도시로 부상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한 전반적 도시발전과 인구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별도의 주택지 조성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천지구와 학사평지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에는 가용토지가 확충되는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학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